

안성 아양지구 B-2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9.19.(금)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148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5.03.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9.19.(금)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4.(화)	25.10.16.(목)~ 25.10.22.(수)	25.10.27.(월)~ 25.10.29.(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y-yemizi.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03.1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안성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4.(화)	25.10.16.(목)~ 25.10.22.(수)	25.10.27.(월)~ 25.10.29.(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77-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규제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는 6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 주택과 - 37550호 (2025. 09. 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아양지구 B-2블록(옥산동 659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657세대

[특별공급 423세대(기관추천 65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1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m², 세대)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단위 : 세대, 원]

- 6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안성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범위를 정하며,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도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거주자에게 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②배점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안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내 거주한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공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124세대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단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이 없어 청약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측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필요서류</th></tr> </thead> <tbody> <tr> <td>본인 신청 시</td><td>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td></tr> </tbody> </table>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14.(화) ~ 2025.10.23.(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0.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5.10.16.(목)~2025.10.22.(수) 7일간 10:00 ~ 17:00	안성 아양지구 B-2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견본주택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77-1)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도 해당 기간내 동시 진행하며, 추첨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해당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 존비속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 불가)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 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V”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의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 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의 3개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필수 제출 - (발급기관) 건강보험공단 ※ 공단 직접방문 필수(온라인 발급시 3개년도 출력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전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통보를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

받은 자					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불가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2024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②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④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정부24 (www.iros.go.kr/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0.27.(월)~2025.10.29.(수) 10:00 ~ 17:00	안성 아양지구 B-2블록 금성백조 에미지 건본주택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77-1)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116899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일자에 해당계좌로 납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01동 0105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에 대한 선납할인, 연체료 등은 공급계약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 시	○		계약금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여권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인터넷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실거래신고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청약 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지연,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또한,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 개시일 전일 까지입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주시 중도금 이자 후불제)**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정확한 사전방문행사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8년 6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 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지정 일자에 해당계좌로 납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101동 0105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5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발코니확장 공사비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은 인정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 대한 선납할인, 연체료 등은 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위치에 따라 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단창이 설치되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

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거실 우물 천장이 시공되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기본선택 및 유상옵션) 안내

(1)기본선택

주택형	계약 구분	품명	규격	비고
84	1	매립배관 (스탠드형+벽걸이형)	거실+안방	택1
	2	천장배관 (시스템에어컨 배관)	거실+안방	

(2)마감재 선택

주택형	계약 구분	품명	규격	비고
84	1	기본마감재	네추럴 클래식	택1
	2	옵션마감재	브라이트 그레이스	

* 마감재 선택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되는 마감자재가 변경됩니다.

(3)빌트인 공기청정기,시스템에어컨 (제조사 : 자이에스앤디, LG전자)

(단위 : 원, VAT 포함)

계약 구분	품명	규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2026.12.21.	입주지정일	
1	빌트인 공기청정기	거실+안방+주방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택1
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3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알파룸(수납특화옵션 선택시 선택불가)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4	프리미엄 시스템 에어컨	거실+안방+주방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택1
5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10,890,000	1,089,000	1,089,000	8,712,000	
6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알파룸(수납특화옵션 선택시 선택불가)	13,090,000	1,309,000	1,309,000	10,472,000	
7	프리미엄+ UV나노 시스템 에어컨	거실+안방+주방	6,875,000	687,500	687,500	5,500,000	
8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11,275,000	1,127,500	1,127,500	9,020,000	
9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알파룸(수납특화옵션 선택시 선택불가)	13,530,000	1,353,000	1,353,000	10,824,000	

※ 기본선택1~2안,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4~9안 중 미선택세대는 거실+안방 천장배관(시스템에어컨 전용)으로 시공됩니다.

※ 기본선택의 배관 방식, 제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 2안 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만 설치 가능합니다.(벽부형, 스탠드형 설치 불가)

※ 시스템에어컨은 공기청정, 홈IoT, 홈네트워크 연동 기능 미포함입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1~2안,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4~9안 중 선택세대는 실외기 1대 설치 기준(기본선택1~2안 실외기는 입주자 설치분,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4~9안 실외기는 시공사 제공)이며, 추후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대이상 추가 설치하여 발생하는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소손,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을 적재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냉방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납특화 옵션1~4를 선택하실 경우 빌트인 공기청정기 3번, 프리미엄 시스템에어컨 6번, 프리미엄+UV나노 시스템에어컨 9번 선택이 불가합니다.

(4)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계약 구분	품명	규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 시	2026.12.21.	입주지정일	
1	현관중문	3연동슬라이딩도어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
2	침실불박이장옵션	침실1 매립형 불박이장, 침실2 매립형 불박이장	2,640,000	264,000	264,000	2,112,000	-
3	드레스룸옵션1	드레스룸SYS선반	660,000	66,000	66,000	528,000	택1
4	드레스룸옵션2	3연동 슬라이딩도어, ㄷ자형 벽판넬SYS선반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5	빌트인 제습기	천정형 빌트인제습기 (코웨이)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
6	수납특화 옵션1	ㄷ자형주방가구, 유리장식장, 팬트리도어, 팬트리SYS선반, 신발장(기본형동일)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택1
7	수납특화 옵션2	ㄷ자형주방가구, 유리장식장, 팬트리도어, 팬트리SYS선반, 현관창고도어, 현관창고SYS선반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8	수납특화 옵션3	ㄷ자형주방가구, 팬트리도어, 팬트리SYS선반, 현관창고도어, 현관창고SYS선반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9	수납특화 옵션4	ㄱ자형주방가구, 옵션형아일랜드식탁, 팬트리도어, 팬트리SYS선반, 현관창고도어, 현관창고SYS선반 (유상옵션 22/23 선택시 가능) * 도시가스배관을 활용한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기쿡탑만 사용 가능	7,150,000	715,000	715,000	5,720,000	
10	주방 마감재 옵션1	E/S 상판 + 벽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11	주방 마감재 옵션2	세라믹타일 상판 + 벽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
12	아트월 마감재 옵션	세라믹타일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13	폭포형 싱크볼	폭포형 싱크볼	880,000	88,000	88,000	704,000	-
14	전해질 주방수전	옵션형 주방수전	770,000	77,000	77,000	616,000	-
15	빌트인 정수기	코웨이 매립형 정수기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
16	공용욕실 드레스업	고급형 도기/수전/액세서리 + 대형타일	1,705,000	170,500	170,500	1,364,000	-
17	공용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	비데일체형양변기	1,155,000	115,500	115,500	924,000	-
18	부부욕실 드레스업	고급형 도기/수전/액세서리/샤워부스 + 대형타일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
19	부부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	비데일체형양변기	1,155,000	115,500	115,500	924,000	-
20	복합형환풍기	옵션형 환풍기 힘펠 휴젠뜨3 FHD3-C150P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21	홈네트워크 특화	아이레보 게이트맨 GM-1000L (지문인식형) 현대에이치티 HDF-R1041(200만화소안면인식/블랙박스) 현대에이치티 HNF-I7135C(13인치) 동영애평 13인치 DM-N330V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
22	프리미엄쿠팡	LG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택1
23		삼성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24	프리미엄오븐	LG	990,000	99,000	99,000	792,000	택1
25		삼성	990,000	99,000	99,000	792,000	
26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부착형 DIE5PT(14인)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택1
27		LG 가구부착형 DIE6PT(14인)	1,815,000	181,500	181,500	1,452,000	
28		삼성 가구부착형 DW80F71Y1SEW (12인)	1,045,000	104,500	104,500	836,000	
29		삼성 가구부착형 DW99F79E1B00 (14인)	1,925,000	192,500	192,500	1,540,000	
30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옵셔널형 냉장고장+LG 빌트인냉장고 패키지(컨버터블)	7,150,000	715,000	715,000	5,720,000	택1
31		옵셔널형 냉장고장+삼성 빌트인냉장고 패키지(컨버터블)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32	주방 조명특화	주방 라인등	550,000	55,000	55,000	440,000	-
33	거실/침실 조명특화	거실 리니어조명+안방/침실 스마트 조명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택1
34	거실/침실 조명특화+실링팬	거실 리니어조명+안방/침실 스마트 조명 + 실링팬(루씨에어 레이더3)	2,288,000	228,800	228,800	1,830,400	
35	안전방범창	원가드 안전창(주방창 미세먼지복합창)	2,860,000	286,000	286,000	2,288,000	택1
36	안전방범창 *4,5동적용	원가드 안전창(주방창 미세먼지복합창)	3,080,000	308,000	308,000	2,464,000	
37	열차단필름	후퍼옵틱 Ceramic 50	2,420,000	242,000	242,000	1,936,000	-
38	AI보일러+온수READY	AI보일러+온수READY	935,000	93,500	93,500	748,000	-
39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LG Z-E0150R2AR/L2AR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택1
40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스마트디퓨저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LG Z-E0150R2AR/L2AR + 스마트디퓨저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5)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93301-04-11691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6)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지정된 일자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주 시(입주지정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별도의 계약 일정을 지정하여 판매·진행되며, 상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여부를 선택하여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공사비에 대한 선납할인, 연체료 등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의 특성상 코너부에는 코너비드가 설치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됨.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는 제품은 제품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및 납부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및 납부일정 등은 별도 통보예정임)
- 상기 유상옵션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한 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또는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 필히기재)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입금 시 예시 : 101동 0105호 홍길동 계약자→'1010105홍길동' / 103동 1001호 홍길순 계약자→'1031001홍길순'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판매금액은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용 매립배관 또는 거실/안방 시스템에어컨 설치용 천장배관의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에어컨 관련 무상, 유상 옵션 중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시스템에어컨용 천장배관 (거실+안방)이 기본 시공됩니다. (후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홈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무선리모컨으로 제어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장비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조명특화옵션 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고,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침실 조명특화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내의 기본 조명인 직부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과 같이 우물천장 라인을 따라 우물천장리니어등이 설치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특화옵션 선택 시에도 알파룸 조명은 감성(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복합형 환풍기 선택 시 세대 내 욕실 천장에 제품이 설치되며, 일반 배기팬은 설치가 제외되며 기존 일반 배기팬의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
- 복합형 환풍기 선택 시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형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형 환풍기 제어를 위한 무선 리모컨은 환풍기당 1개씩 제공됩니다.
- 빌트인공기청정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대한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공기청정기는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공기청정기는 무선리모컨으로 제어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장비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빌트인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시, 각 실 빌트인공기청정기 전원공사(배관/배선)를 하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전원공사(배관/배선)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링팬 유상옵션은 거실,침실 조명특화옵션 선택시에만 추가로 선택 가능합니다.
- 실링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링팬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링팬은 별도 무선리모컨으로 동작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홈IoT, 홈네트워크 연동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13인치 주방TV가 설치되고, 미 선택 시 기본형인 10인치 주방TV가 제공됩니다.
- 홈네트워크 특화 유상옵션 중 주방TV는 옵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별도 구축해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지문인식 푸쉬풀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되고, 미 선택 시 기본형인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일반 푸쉬풀 디지털도어락이 제공됩니다.
- 홈네트워크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안면인식 도어폰이 설치되고, 미 선택 시 기본형인 안면인식 기능이 없는 일반도어폰이 제공됩니다.
- 홈네트워크 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형 제품들은 품질 및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제습기는 드레스룸 천장에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천장 내부에 전원 및 드레인배관이 제공되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용 전해질 살균수전 옵션 선택 시 싱크대 하부장 내에 살균을 위한 유닛가 설치됨에 따라 하부장 수납공간이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고급 위생기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휴지걸이, 수건걸이의 설치위치와 사이즈는 기본 위생기구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정수기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하부장 내부에 정수를 위한 유닛가 설치됨에 따라 하부장 수납공간이 줄어 들 수 있으며 하부장에서 수전연결을 위한 측판이 타공될 수 있습니다.
- AI보일러+온수레디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쿼버튼은 세대 당 2개가 제공됩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선택 시 유선 컨트롤러가 세대 벽체에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는 월패드를 통한 제어 시 일부 기본 기능만 구현되며, 나머지 기능은 전열교환기의 유선컨트롤러를 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의 각방 선택운전 (부분 선택운전) 기능은 월패드에서는 제한되며 프리미엄 전열교환기의 유선컨트롤러에서만 기능구현이 가능합니다.
- **수납특화 옵션4를 선택 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을 활용한 화기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인덕션 또는 하이라이트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위세대 주방에 도시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발코니에 가스미터기 후단배관 밸브까지 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타일·창호·가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바닥	마루,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걸레받이,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월패드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장을 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일반 가구	현관신발장, 드레스룸도어, 파우더장(상판인조석 포함), 악세서리 일체	-

	주방	주방가구 일체(상판, 선반, 싱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벽 타일/인조석, 주방TV,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오븐), 수전류, 다용도행거레일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악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 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조적 위 방수[바닥, 벽체(방수한계선까지)],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 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발코니	수전류 (세탁수전, 발코니 수전 등), 전동빨래건조대	발코니 바닥방수
	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조명 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
금액	35,724,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공사(확장 시 별도제공품목 시공 포함)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공사 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안성시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마이너스 옵션 세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11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25년 7월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실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학원차량 대기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동 시공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모델하우스 모형도 및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아파트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단지내상가)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주택면적을 변경하여 변경된 면적으로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 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외부에 송전탑 및 지중화 철탑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택지조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 단지의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백성초등학교이나, 인근 개발지구 사업 여부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안성중학군(안성중, 안성여중, 비룡중, 안성중, 명륜여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 지망, 후 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켓,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CG,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선택 시에만 설치됩니다.
- 마감자재는 마감재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견본주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이음부위의 위치 및 상세시공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타일 및 인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어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와 상이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공동주택 단지 동측에 도로(26.5m)가 있으며, 완충녹지(10m)사이 버스정류장이 있어 통행이 가능한 외부계단과 램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18M 도로, 동측으로 26.5M 도로, 남측으로 25M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아양2공원, 아양도서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공동주택 등이 인접해 있으며,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가로등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가로등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아롱개문화공원, 안성천, 안성소방서, 안성상공회의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잡,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번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계획(학교, 근린공원 등)은 해당 조성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 내 보행로 및 조경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높이 및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및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 동 저층 일부 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종교시설(안심사)이 위치하고 있고 종교 행사에 따른 소음, 혼잡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안성도기동산성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유적건조물이 조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단지배치 및 지상부]

- 단지 내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 및 조경, 바닥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의 건축물 신축, 동간 또는 세대간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변경,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환류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설치되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이용자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맘스스테이션(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 인근에 설치)과 통학차량 정차가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8동은 필로티 내부, 이외 각 동 인근 외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출입구는 북측에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 1개소가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은 최하층세대가 3층부터 시작되며 세대 하부로는 차량출입구를 통한 차량이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도로와 면한 단지 내 보도로 외부인이 통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서측 가칭)안성아양택지지구-중학교와 당 대지경계의 조경과 맞닿은 연결녹지 구간의 토목관련 사항(공법, 자재, 난간, 선형, 레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추가설치 요청의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펌프·전기실 DA,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측 10m 연결녹지, 동측, 남측 10m 완충녹지에 면한 단지내 조경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엘리베이터는 보안과 환경개선을 위해 위치와 평면,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는 입주시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8동 사이 북측에는 진출입 차량, 보행동선과 면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 실외기, 쓰레기분리수거장 위치는 기타외부시설 안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층 또는 일부세대는 입주시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난간 설치계획(자재, 형태,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조경시설물 이외에도 DA와 장비반입구 및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및 도시가스 관련시설, 통신 맨홀, 실외기등 공동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주동]

-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 필로티 상부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탑층 구조물,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비주거시설(PIT 등), 공동주택 외벽 등에 따른 빛의 산란,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로 인하여 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피난계단실에는 1층을 제외한 5층부터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엘리베이터의 형태, 면적, 채광 및 환기 등은 세대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8동 사이 지하 1층에 맘스스테이션 및 승하차 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매연, 빛 공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상 1층에 환기구(펌프실, 환풍, 제연환풍 등)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8동 사이에 차량출입 램프가 설치되며,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 소음, 차량출입 경고음 및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 필로티를 통해 차량출입 램프가 설치되며, 차량출입 램프 위측 세대는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 소음, 차량출입 경고음 및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2동과 103동 사이, 103동과 104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106동과 107동 사이에는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 지상 1층 작은도서관, 돌봄센터등이 위치할 예정이며,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과 107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위치할 예정이며,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항별, 층별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인허가 및 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형태, 높이, 마감 및 색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옥상(102동, 104동, 106동, 108동), 지하1층 : 동통신실(102동, 104동, 106동)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통신품질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 행정 조치사항으로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이를 확인하고 수인합니다.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눈부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저층 및 최상층 일부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지하주차장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실, 펌프실, 환풍, 제연환풍 등 단지 운영을 위한 설비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장비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추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인근에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주거환경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DF실(108동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맘스스테이션, 경비실과 인접한 108동,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102동, 어린이집, 경로당과 인접한 106동/107동, 돌봄센터, 공동회의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102동/103동,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108동)
- 단지 차량 주출입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입주민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 주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출입구는 단지 북측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별로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차단기 위치는 추후 설계 변경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주동들이 연결된 구조로 주차대수 및 동별 주차배분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환 등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환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풍기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출입구 높이와 차로 유효높이는 2.3m ~ 2.7m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주동 주차의 형평성 및 주차계획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코어별)이 설치되며,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 1층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추후 본 공사 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인근에 우수조 및 우수펌프실과 107동, 108동 인근에 펌프실/저수조, 전기실/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가동 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인입될 수 있어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충전을 위한 주차면도 전체 주차면 계획대수에 포함이 되고 접근 및 이용 (전기자동차 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동 지하1층 동측 인근에는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비상용 차량 통로가 설치됩니다. 이 통로는 화재 발생 시에만 사용되는 비상용 차량 통로로 평상시에는 상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후 및 환경요인으로 인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과 102동 사이 지하1층에, 경로당, 어린이집은 106동과 107동 사이 1층에, 주민공동시설 입주자회의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102동과 103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공동회의실, 작은도서관(2개소), 돌봄센터는 102동과 103동 사이 1층에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 맘스스테이션은 101동과 108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공동회의실, 입주자회의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회의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입주자회의실의 이동식 가구, 가전, 소모품 및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102동과 103동 사이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맘스스테이션은 101동과 108동 사이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입주자회의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CG상 표현된 집기류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이 104동과 105동, 107동과 108동 사이에 설치되며,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이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이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이에 따른 운영여부는 입주민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장구류 및 소모품 제외)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가전, 소모품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실외기는 옥상 및 외부로 향한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조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경로당(106동~107동), 작은도서관/돌봄센터(102동~103동), 근린생활시설(108동), 주민공동시설(102동~103동) 실외기는 옥상 및 외부로 향한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조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방재실은 101동과 102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8동 인접한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예미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세대 및 계획]

- 비확장 발코니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도면, 모델하우스와 달리 발코니 길이 및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 세대일 경우 비확장 부분과 접한 확장 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 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장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틀에서 외기에 면한 프레임 색상은 유색으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마감재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의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시공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107동,108동) 상부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설치용량은 전기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5호라인 층변화구간 최상층세대, 106동, 107동 1호라인 층변화구간 최상층세대 아파트 상부에는 옥상 조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조경에 의한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식재에 의한 옥상 방수층 훼손 및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의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위치(옵션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고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 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의 마감두께는 원활한 배수 등을 위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판과 가구장사이에 코킹은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하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온수분배기로 인하여 음식물탈수기 및 음식물처리기 등의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되는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등 마감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가구, 욕실장, 현관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뒷벽 및 아래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수전, 액세서리류, 장비위치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 중 일부는 이동식이 아닌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반이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시공되는 타일, 인조석, 벽지 및 마루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니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정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유상옥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틈이 발생하며 차음, 기밀성능과 무관한 도어입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동일한 타입이라도 세대 합벽구간에 면한 세대의 실외기실과 발코니는 하향식피난구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라인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등의 전화수신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위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 시 해당 공간에 대한 하자 및 A/S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신 후 계약 체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공/전시품목]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물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 (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기계, 전기 설비

- 아파트 난방 및 급탕은 개별난방 열원(세대 가스보일러)을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욕실 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 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 확장 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욕실 배기는 직배기방식이며 배기덕트가 세대 천장 내부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므로 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창문 개방 시 냄새 등이 흘러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안방 제외)에는 선풍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신 세대에는 매립형 냉매배관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설치되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옵션품목 계약에 따라 시공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비의 시공위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PD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용슬리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분전반은 침실2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 및 욕실배기는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욕실 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 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배관으로 상부세대 발코니의 배수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배관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결로 등으로 인하여 소손된 경우 시공하자가 아니며, 적극적인 환기활동을 통한 소손방지의 책임이 입주민에게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슬라브에 설치된 화재감지지가 결로 등으로 인하여 소손된 경우 시공하자가 아니며, 급배기팬 가동 등으로 적극적인 주차장 내 환기활동을 통한 소손방지의 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동의 형태에 따라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정확한 사전방문행사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월 : 2028년 6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5 M, 7.0 M	2.3~2.7 M	2.95 M(램프구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개정 2017.12.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5-0782-9
평가자 : (주)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 주택에너지효율 등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5-0782-9
평가자 : (주)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5-0782-9
평가자 : (주)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 주택에너지효율 등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5-0782-9
평가자 : (주)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2-14-0109
평가자 : 지가검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25.08.14. ~
인증 대상 : 지가 1층, 지상 25층
인증 면적 : 108,364.9726㎡(약 16만 1422㎡)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및 행정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적자 : 에코원플러스(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나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 여부	적용내용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가. 단열조치 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다. 기밀 및 결로방지	적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가. 설계용 외기조건 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라. 고효율 전동기 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바. 절수형 설비 설치 사.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개발난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 92%이상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배 이상 제품 사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가. 수변전설비 설치 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다. 조명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라.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마.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이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호	2,181,806,110원	615,384,500원	790,337,000원	160,000,000원
금액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건일엠이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VAT포함)

항목	공종	금액	구분	공종	금액	구분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53,884,705	공사비	철근콘크리트	32,515,362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1,030,179
	기간이자	5,010,30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842,788
	필요적 경비	2,814,431		조적공사	1,728,758		가스설비공사	468,007
	그밖의 비용	6,901,975		미장공사	2,376,123		자동제어설비공사	93,225
	계	68,611,415		단열공사	985,760		특수설비공사	1,591,410
공사비	토공사	1,083,827		방수,방습공사	1,802,322		공조설비공사	795,705
	흙막이공사	-		목공사	2,736,587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9,002,521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3,280,962		정보통신공사	1,908,384
	옹벽공사	521,488		금속공사	742,998		소방설비공사	6,502,373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610,583		승강기공사	1,459,578
	우수,오수공사	182,521		창호공사	7,246,071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23,619,391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471,283		이윤	1,802,938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9,561		타일공사	2,640,954	간접비	계	128,832,345
	도로포장공사	329,841		돌공사	1,250,591		설계비	1,019,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823,919		감리비	3,711,016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985,760		일반분양시설경비	9,030,557
	조경공사	794,400		수장공사	1,309,442		분담금 및 부담금	201,179
	부대시설공사	94,302		주방용구공사	3,089,695		보상비	-
	공동가설공사	3,891,544		그 밖의 건축공사	595,870		그밖의 사업비성 경비	50,829,950
	가시시설물공사	1,331,511		급수설비공사	1,404,019		계	64,791,702
	지정 및 기초공사	1,802,322	기계설비	급탕설비공사	936,013		그밖의 비용	18,346,438
	철골공사	345,752		오배수 및 배수설비공사	795,705		합 계	280,581,9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항목		심사결과금액	산출근거	
택지비가산비	법정 택지이자		5,010,304,141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취득세	취득세	2,155,388,194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지방교육세	215,538,819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재산세	재산세	226,315,76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지방교육세	45,263,152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과세특례	158,421,032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등기수수료	보수료	13,154,897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인지세	349,284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44,402,374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말뚝박기 공사비		6,557,572,84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14,726,710,494		
건축비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597,398,007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공사비	6,514,386,0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특등급공사비	1,651,564,5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설치공사비	1,471,454,1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치 공사비	2,638,672,2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653,218,839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1,018,315,8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차충전시설	349,017,24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정 초과 조경설치비		-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입면마감특화 공사비		-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분양보증수수료		771,289,985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계(택지비 가산항목)		18,665,316,67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안성 아양지구 B-2블록 금성백조 에미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712025-101-0000300호	₩196,407,33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사업 관계자

구 분 상 호	시행사(사업주체) (주)금성백조주택	시공사(1) (주)금성백조주택	시공사(2) (주)대승글로벌	분양대행사 (주)산하이앤씨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 (탄방동)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 (탄방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19-3, 제1동 303호(엑스큐브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서초동 세원빌딩)
법인등록번호	160111-0017304	160111-0017304	110111-5498939	110111-5680502
대표번호	042-630-9595	042-630-9595	041-545-9750	02-586-5400

• 홈페이지 : <https://ay-yemizi.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77-1

• 분양문의 : 1899-148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